

1. 개정이유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신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안 제39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45조제3항)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다.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을 규정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105조제1항, 제2항)

추가징수액 부과 기준인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에 당해 지급제한 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공모형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산정되도록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마.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 규정
(안 제116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9조 후단 중 “사항”을 “사항이나 조업시작 예정일”로, “별지 제44호서식”을 “조업시작 예정일의 전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12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본문 중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산·사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1개월 분으로 계산한다.

제105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추가징수의 원인이 되는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또는 4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업주와 공모하여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추가징수의 원인이 되는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3회 미만	100분의 300
	3회 또는 4회	100분의 400
	5회 이상	100분의 500

제116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제125조의9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전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제도 안내(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1. 육아휴직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사업주 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기간·대상·금액·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사이트(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예술인 [] 가 입 신청서
[] 15세 미만 예술인 [] 가입탈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신청 대상 (예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 아래의 란 중 ‘*’ 표시된 란은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영문*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적*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직종 부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월평균보수
			원	원

단기예술인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제104조의6제4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예술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등 문화예술옹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이거나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예술인과 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주 등은 해당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보험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는 신청 대상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합니다)가 예술인 사업장으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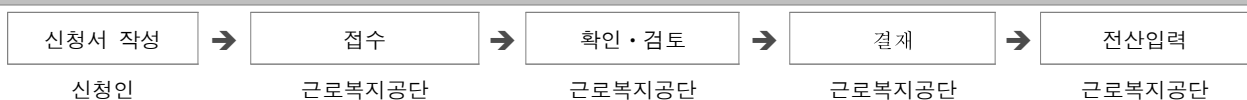
신청 대상 (예술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영문,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 직종 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 계약금액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총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
- 단기예술인 여부란에는 예술인 중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인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예”에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고용보험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직종부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월평균보수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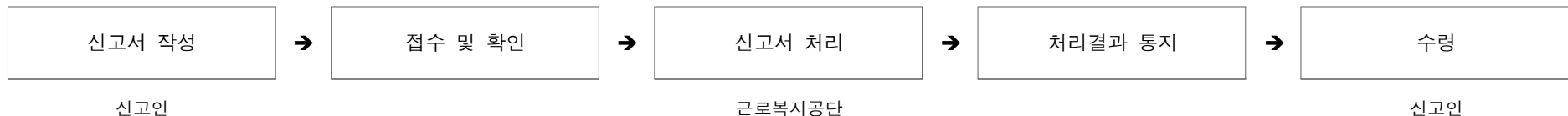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뒤쪽]의 직종 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계약기간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계약시작일과 계약종료일을 말하며, 계약시작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5. 계약금액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총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6.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처리 절차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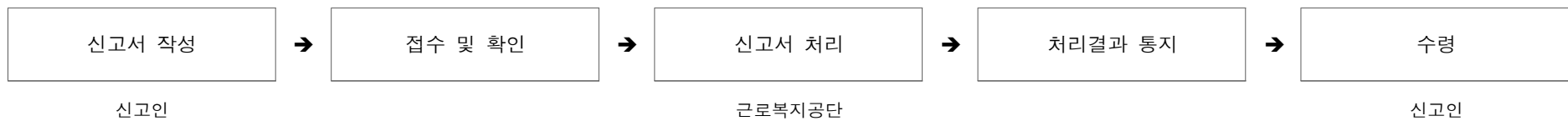
작성 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4.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별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직종 부호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 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택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처리 절차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직위"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그 밖의 직무
3.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합니다.(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
6.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간주)을 말하며,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보수를 적습니다.
7.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9.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	○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 부담금 부과대상)
52	○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	x	○	○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	○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	x	x	○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지역고용 ☐ 계 획 ☐ 계획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	------	-----------

사 업 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⑤업종명	(주생산물:)				
	⑥업종코드					⑦피보험자수 명

사업장 이전 · 신설 · 증설 계획	⑧이전 계획	이전 예정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년 월 일					
	⑨신설 계획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명			업종코드		
		시설·장비 설치현황			예상소요비용:	만원	
⑩증설 계획	시설·장비 증설현황			예상소요비용:	만원		
지역근로자 고용계획	⑪조업시작 예정일	최초	년 월 일	⑫고용예정 인원	명		
		변경	년 월 일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⑤업종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출산 예정일(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4. ①-1란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여부를 적고, ①-2란에는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①-3란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고, ①-4란에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①-5란에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 합니다.
5.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③란, ④란,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7. ④-1란의 “추가 지급분”이란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8. ⑤란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9. ⑥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10.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①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②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을 했던 기간과 총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11. ⑥란, ⑦란, 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⑧란에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13. 배우자 서명란(1쪽 및 3쪽)은 신청내용 중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를 말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유 관련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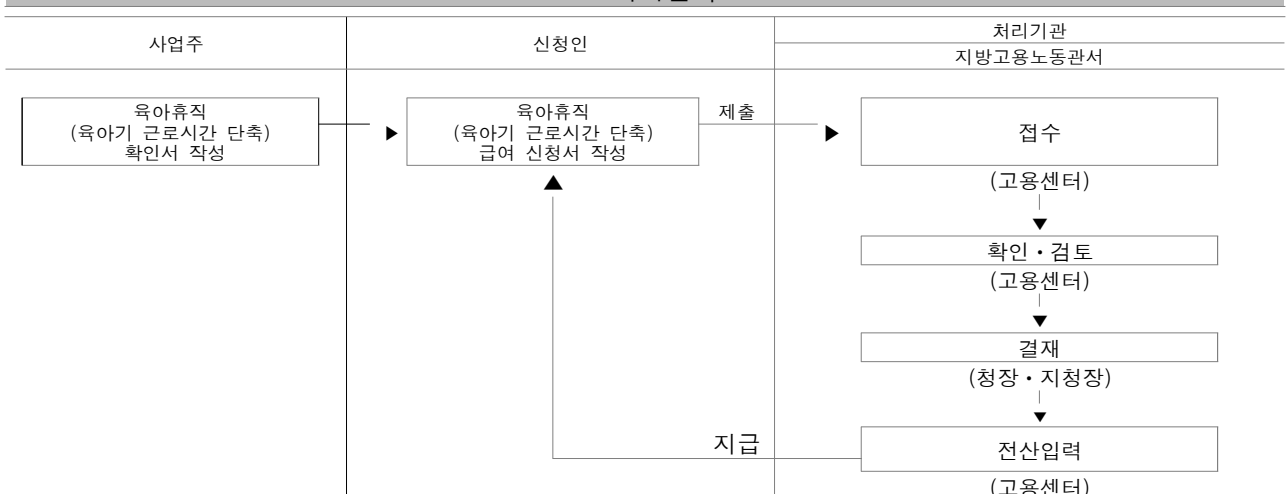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사 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1. 위 육아휴직 기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⑧-2.(⑧-1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추가 부여기간(6개월)이 포함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⑧-3. 위 육아휴직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단기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까? [] 예 [] 아니오					
⑧-4.(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주 단위로(7일 또는 14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며칠입니까? [] 7일 [] 14일					
⑧-5.(⑧-3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입원,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원·휴교 [] 방학 [] 질병·사고로 입원 []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⑧-1란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2란에는 ⑧란에서 '예'로 선택한 경우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⑧-3란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고, ⑧-4란에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⑧-5란에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1. 육아휴직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사업주 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기간·대상·금액·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사이트(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⑨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라고 표시합니다.
 4.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은 후 ⑨란의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5. ⑪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6.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산정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시급, 일급, 주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 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1. 육아휴직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사업주 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지급 요건·기간·대상·금액·신청기한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사이트(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
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
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
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생략)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 사항이나

조업시작 예정일-----

----- 조업시작 예정일의

전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

-----.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년 6개월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신청) ① -----

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2의2. (생 략)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
아휴직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 제

다.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
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
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
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

2. 2의2. (현행과 같음)

3. -----

가. ----- 육아
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라 한다)를 -----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

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 3. (생략)

4.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단서 삭제>

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
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
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
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
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
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 략)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지급방법) (생 략)

<신 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
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
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③ -----

-----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

-----.

1. 2. (현행과 같음)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지급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
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
무분담자를 지정한 기간은 역
(曆)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1개월 분으로 계산
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
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

다.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3회 미만	100분의 100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이상 5회 미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

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

--.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추가징수의 원인이 되는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3회 미만	100분의 100
	3회 또는 4회	100분의 150
	5회 이상	100분의 200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

0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
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
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
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

①

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 아. (생략)

<신 설>

-----.

1.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u>명자료 사본 1부</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 ----- ----- ----- ----- ----- ----- -----.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1. ----- 별지 제5호의3서식-----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